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개정하고,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 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302호, 2018. 7. 16. (2018. 7. 16. ~ 2018. 8. 5.)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 6. 25.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 5. 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8-2099호(2018. 7. 11.)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3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신규 수입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허용 축산물에 반영하고,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가공품 정의 수정(안 제2조)

1)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

2) 유가공품의 정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를 명확화

나.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안 제5조)

1) 수출제품은 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수입위생요건으로는 요구하되 수출위생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모든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

2)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

3)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방지

다.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안 별표

1)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 가공유류, 유크림류와 체코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

2)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 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8. 7. 30. ~ 2018. 8. 20.), WTO 회람(2018. 8. 2. ~ 2018. 8. 20.)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8. 7. 24.)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 ·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 · 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자구수정(제3조제2항제1호)

1)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관련「축산물의 표시기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8. 4. 2.)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8-192호, 2018. 5. 4.)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 및 신설하고,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개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1)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 mg으로 설정하고, 섭취 대상 및 섭취 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추가함

나. 알로에 전잎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1) 섭취 대상 및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1) 섭취 대상 및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1)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 중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섭취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154호(2018. 4. 13. ~ 2018. 6. 12.)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가) 기능성원료 · 성분 인정 및 기준 · 규격분과(2018. 6. 2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제2018-154호(2018. 4. 13.)]

나) 자체규제심사 : 2018. 7. 23. ~ 2018. 7. 24.(식품분야, 26회)

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8. 8. 27. ~ 2018. 8. 31.(제643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

소식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9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HACCP의무 시행('17.12) 관련 영업자 부담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추가 또는 신규 진입시 인증 준비기간을 마련하고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을 추가 제조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6개월) 유예기준 마련(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8. 8. 22. ~ 2018. 9. 5.)

2) 규제심사 (비규제 확인, 2018. 8. 3.)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70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검사를 위한 수거장소를 확대하고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보완,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유통단계 수거 · 검사결과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방법을 보완하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1)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사전 차단(안 제2조, 제16조)

2) 식용란에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차단(안 제14조)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식용란 수거장소 확대(안 제6조)

다.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생산규모에 따라 채취량을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대표성 보완(안 제6조, 별표 1)

라.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하여 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문 정리(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시 · 도 축산물 시험 · 검사기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

2) 위반 원인(이물질 및 변질 · 부패란, 잔류물질, 미생물) 별로 조치사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개별 조문으로 정리

바. 유통단계 수거 · 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달 · 공유하고 부적합 식용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02호, 2018. 5. 10.(2018. 5. 10. ~ 2018. 5. 31.)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8. 4. 25.) : 심사대상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8. 9. 14.) : 비중요 규제

소식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에 의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자변형 미생물 추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식품첨가물을 모든 식품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β-아밀라아제)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진주빛색소)

4)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카제인칼륨)

5)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락타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식품첨가물의 다양한 제조방법 적용을 위한 정의 개정 및 품목별 식품첨가물의 특성을 반영한 성분규격 개정 필요

2)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 추가(II. 4. 가. 락타아제)

3) "밀납"의 실제 제품 색깔을 반영한 성상 수정(II. 4. 가. 밀납)

4) "D-소비톨"의 분자식 오기 수정(II. 4. 가. D-소비톨)

5) "카로틴" 확인을 위한 INS No. 추가(II. 4. 가. 카로틴)

6) "L-히스티딘" 정량법 중 지시약의 색변화 명확화 및 "히알루론산"의 순도시험 중 대장균 시험방법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II. 4. 가.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

7)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산업활성화 및 규정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다. 일반시험법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1) 식품첨가물 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용어 및 사용되는 지시약 변경 필요

2) "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공시험', '본시험' 용어 변경(IV. 35. 사)

3)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III. 5. 과산화수소제제)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소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32호, 2018. 5. 30.(2018. 5. 30. ~ 2018. 7.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8. 9. 12.) : 원안의결

3)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2018. 6. 27.)

소식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 규격의 인정 심사에 대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인정 심사 시 필요한 제출 자료를 간소화 · 명확화 하고, 인정심사 조건이 되지 않은 심사 서류의 반려 및 필요시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제14조제3호)

1) 영업자가 제조단계별 자료 중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어 개선 필요

2) 기능(또는 지표)성분 자료를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던 것을 주요 제조단계별(추출, 여과, 농축 등)로 제출

3) 제출자료 간소화로 영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 감소

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명확화(별표3)

1) 영업자가 안전성 자료 제출시 독성시험자료 제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필요

2) 섭취근거 자료, 섭취량 평가근거 자료 제출 범위 및 독성시험 제출 자료 명시

3) 제출자료 명확화로 영업자의 제출 자료 이해도 제고

다. 인정심사 내용 개선(제8조제4호, 제14조제8호, 제19조제7호)

1) 인정 심사 조건이 되지 않는 서류 및 인체적용시험 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2)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인정 신청 서류의 반려 및 필요시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요구

3) 규정에 적합한 자료 제출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의 원활화

라. 관련 규정 현행화(제3조제2항, 제5조제5호, 제7조, 제14조제5호 · 제6호, 제1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9조제2호 · 제5호 · 제8호, 제20조제1호, 별표 3, 별표 5, 별지 제3호서식)

1)「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폐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문구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91호, 2018. 7. 6.(2018. 7. 6. ~ 2018. 9. 5.)

소식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 성분 인정 및 기준 · 규격분과 심의: 2018. 9.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2015호(2018. 7. 4.)

소식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에 적용되는 공통규격으로 위생지표균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식중독균, 소스류의 대장균 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한 신맛캔디로 인하여 구강 내 피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유통 캔디류에 총산의 함량과 제조 · 가공기준을 신설하고, 곰팡이독소 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아플라톡신(B1 포함),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의 규격을 확대, 강화 또는 신설하고자 함

알 중 농약(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구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맞춰 식품원료 분류를 개정하며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제1. 4. 1)]

1) 식물성 원료 분류를 국제규격(CODEX)과 조화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3) 식물성 분류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화하게 관리

나. 미생물 위생지표균 규격 강화 및 수산물의 식중독균 적용 대상 명확화[제2. 3. 4) (1), 제2. 3. 4) (2), 제4. 12. 12-2 5) (3)]

1) 살 · 멸균제품에 위생지표균 규격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위생지표균을 공통규격에 추가 신설
2) 더 이상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은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3) 소스류 중 비살균제품의 대장균 규격 개정
4) 위생지표균 규격 신설 및 식중독균 적용대상 명확화로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확보

다. 곰팡이독소의 규격 신설 및 개정[제2. 3. 5) (3)]

1) 식품의 곰팡이독소 기준 · 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위해관리가 필요한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규격 확대 및 오염도가 높은 식품의 규격 신설 및 강화
2)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과 아플라톡신 B1 규격을 식물성 원료 및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3) 수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이 50% 이상 함유된 곡류가공품의 푸모니신 규격 신설
4) 후추, 심황(강황), 육두구 및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의 오크라톡신 A 규격 신설
5) 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의 제랄레논 규격 강화
6)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소식

라. 콩나물 중 육-비에이 농약 기준 개정[제2. 3. 7) (2)]

1) 콩나물에 농약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콩나물에 등록된 육-비에이(6-BA, 6-Benzyl aminopurine, Benzyladenine)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콩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캔디류에 총산 규격 및 제조 · 가공기준 신설[제4. 1. 3) 및 5)]

1) 강한 신맛 캔디로 인하여 구강 내 피부 손상 사례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

2)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 · 가공기준 신설

3) 신맛 캔디로 인한 식품사고 사전 예방

바.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별표1]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의 식품원료 등재 필요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 · 이명 등이 확인된 어류, 갑각류 등 동물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사.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0) 다이쾃(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1) 베노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90) 엔도설판,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09) 티오파네이트메틸,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25) 클로로탈로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3) 트리아조포스, (150) 티아벤다졸,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5) 펜뷰코나졸,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80) 플루실라졸, (186) 프로클로라즈,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9) 테플루벤주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3) 이미벤코나졸, (257) 플루퀸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65) 디메테나미드, (271) 메피콰클로라이드,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소식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3) 플루록시피르,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70) 벤티아발리카브 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5) 펜피라자민, (440) 설퍼릴플루오라이드,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49) 이마자피르,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7) 아이속사플루톨,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72) 클로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11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축 · 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6 중 (65) 피리미포스메틸]

1) 알 중 피리미포스메틸(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자. 일반시험법 신설 [제7. 7.1 7.1.4 7.1.4.215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클로피랄리드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140호, 2018. 4. 4.(2018. 4. 4. ~ 2018. 6. 4.)

나) 공고 제2018-274호, 2018. 6. 28.(2018. 6. 28. ~ 2018. 8. 27.)

다) 공고 제2018-395호, 2018. 9. 18.(2018. 9. 18. ~ 2018. 10. 10.)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1차)2018. 7. 26., (2차)2018. 9. 12.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18. 6. 18.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8. 7. 12.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소식

: (1차)2018. 2. 7., (2차)2018. 6. 25., (3차)2018. 8. 9., (4차)2018. 9. 12.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제2018-983호(2018. 4. 3.), 제2018-1922(2018. 6. 26.), 제2018-2897(2018. 9. 1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 8. 8 ~ 2018. 8. 9,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8. 8. 28.)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647회, 2018. 10. 1~2018. 10. 5)

소식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을 신규지정하며, 다양한 식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의 산도 기준을 삭제하고, 영유아식의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1)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에 대한 근거 명확화 필요
2)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Ⅰ. 3. 6))
3)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별표에 신설(별표 4)
4) 천연유래 기준 명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나.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식품 종류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살균제의 신규지정 필요
2) 식품의 살균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Ⅱ. 5. 가. 과산화초산)
3) 식품의 생산 및 제조 · 가공에 적합한 살균제 사용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다. "국"의 성분규격 개정

1) 국 중 입국의 제조에 다양한 균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개정 필요
2) "국"의 성분규격 중 산도 기준 삭제(Ⅱ. 4. 가. 국)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영유아식의 안전관리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기준 설정 필요
2) "구아검" 등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 설정(Ⅱ. 5. 다.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 · 유아 보건 향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소식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51 호, 2018. 6. 15.(2018. 6. 15. ~ 2018. 8. 15)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8. 9. 12.) : 원안의결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8. 8. 30.) : 심사대상

나) 자체 규제심사(2018. 9. 28.) : 원안의결

다)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018. 10. 12.) : 의견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8. 10. 26.) : 비중요 규제

소식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 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단위 용어 정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별표 1의 3. 가, 별표 2의 3. 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단위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1회 제고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3) 1회 제공량당 표시를 총내용량당, 단위 내용량당(컵, 개 또는 조각 등) 또는 1회 섭취 참고량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별표 1의 3. 나)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77호, 2018. 6. 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우너회 규제심사완료(2018. 9. 21) : 비중요 규제

소식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와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4.26)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제3조제2항)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준용하도록 함

3) 규정 조화에 따른 민원 혼란 해소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78호, 2018. 6. 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완료('18.9.21.) : 비중요규제

소식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5) 노르플루라존, (9) 델타메트린, (12) 디디티, (14) 디메토에이트,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0) 다이쾃, (21) 디클로르보스, (23) 디클로란, (24) 디클로베닐, (26) 디페노코나졸, (27) 디페닐아민,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0) 베나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2) 빈클로졸린, (64) 시마진, (65) 사이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2) 아세토클로르, (73) 아세페이트,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0) 엔도설판, (93) 오메토에이트, (95) 옥사딕실, (96) 옥사밀, (97) 옥시플루오르펜, (99) 이사-디,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0) 퀸토젠,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콰, (129) 클로르펜빈포스,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39) 톨클로포스메틸,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3) 트리아조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48) 트리플루랄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5) 파라티온메틸, (156) 파클로부트라졸, (157) 퍼메트린, (158) 페나리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195) 피리미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2) 헵타클로르, (204)

소식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5) 이프로벤포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2) 메파니피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29) 카프로파미드,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0) 페녹시카브, (242) 루페뉴론, (245) 벤퓨러세이트,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2) 오리잘린,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61) 할록시포프, (265) 디메테나미드, (267) 디클로르프로프, (268) 디메타메트린, (270) 메페나셋, (271) 메피퀏클로라이드,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79) 사이할로포프뷰틸,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88) 이마조설퓨론, (290) 인독사카브, (291) 족사마이드, (292) 퀸클로락, (293) 사-시피에이, (294) 터부틸라진, (299) 티플루자마이드, (300) 펜톡사존,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3) 포클로르페뉴론, (304) 프로베나졸, (305) 프로파퀴자포프, (309) 플루톨라닐, (311) 피라조설퓨론에틸, (317) 하이멕사졸, (318) 할로설퓨론메틸, (319) 니코설퓨론, (320) 다조멧,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27) 오리사스트로빈, (330) 인다노판,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6) 티디아주론,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0) 페녹사닐,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틸,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61) 테플루트린, (364) 티아디닐, (370) 벤티아발리카브 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76) 트리플루뮤론, (377) 티펜설퓨론메틸, (378) 페림존,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88) 시안화 수소,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7) 옥사디아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6) 브로모뷰타이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3) 퀴노클라민,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1) 레피멕틴,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4) 에폭시코

소식

나졸,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0) 설퍼릴플루오라이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49) 이마자피르,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4) 플루엔설폰,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9) 플루트리아폴, (472) 클로피랄리드, (473) 피라지플루미드, (474) 플로르피록시펜벤질, (475) 세닥산, (476) 트리데모르프, (477) 날리드, (478) 디클로슐람, (479) 메설퓨론메틸, (480) 설펜트라존, (481) 아이속사벤, (482) 옥시데메톤메틸, (483) 이마자목스, (484) 이마자퀸, (485) 이마제타피르, (486) 이육-디아이피엔, (487) 퀴녹시펜, (488) 클로리다존, (489) 클로리뮤론에틸, (490) 터바실, (491) 테프랄록시딤, (492) 펜프로피모르프, (493) 포메사펜, (494) 프로설포카브,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497) 피녹사덴, (498) 피리데이트]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3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 [제7. 7.1 7.1.4 7.1.4.216-220]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등 5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433호, 2018. 10. 12.(2018. 10. 12. ~ 2018. 11. 1.)
   나) 공고 제2018-452호, 2018. 10. 19.(2018. 10. 19. ~ 2018. 11. 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 2018. 10. 5., (2차) 2018. 10. 17
3)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가) 규제심사 비대상 : 제2018-3276호(2018. 10. 12.), 제2018-3413호(2018. 10. 23.)

소식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0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 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조정이 필요

또한,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지침 적용대상 범위에 축산물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제1조)

1) 축산물은「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 · 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제4조 및 제8조)

1)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 · 임산물은 한약재와 동일한 기준 · 규격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는 등 사후관리 실효성이 없어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2018. 2. 9., 시행)을 반영하여 농 · 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제5조)

1) 농 · 임산물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사 대상에서 서류검사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추가 (제7조)

마.「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제2017-57호, '17.6.30.)를 반영함 (제8조, 제13조의3, [별표 5])

1)「식품의 기준 및 규격」변경에 따른 조문 및 조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문구 삭제하는 등 자구 수정

바.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청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을 조정 (제8조의2제1항제1호)

1)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 확인하도록 확인 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사.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함 ([별표3])

1)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6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을 제외하

소식

고자 함

2) 단성분 농약 212종 중, 기준 · 규격이 신설된 5종을 추가하여 217종으로 조정

아.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브로콜리 등 농 · 임산물 4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5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2)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및 호두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 7. 1.자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369호, 2018. 8. 31.(2018. 8. 31. ~ 2018. 10. 31.)

2) WTO 통보(2018. 8. 31. ~ 2018. 10. 31.)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18-2553호(2018. 8. 21.)

소식 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간편식인 도시락의 위생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함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이유식 용도인 영 · 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 · 유아식 유형을 정비하여 영 · 유아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품질규격의 합리적으로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영 · 유아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을 부정물질 목록과 시험법을 신설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식중독균 공통규격의 적용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기준 · 규격의 관리 실효성이 적은 총중금속 기준을 삭제하고 크릴유의 비소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여 생산자의 관리부담 경감 및 식품산업의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의 일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어 신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산겨릅나무를 누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및 메틸수은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락의 제조 · 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5) ~ 27)]

1)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기준 신설 필요
2) 도시락에 사용되는 야채류의 세척기준, 냉동수산물의 해동 기준 등 신설
3) 도시락의 위생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영 · 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 · 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1. 2. 3), 제2. 3. 4) (1) 가, 종전의 제2. 3. 4) (2) 마, 제2. 3. 5) (2) ④, 제2. 3. 5) (3) ①, 제2. 3. 5) (3) ②, 제2. 3. 5) (3) ③, 제2. 3. 5) (3) ⑤, 제2. 3. 5) (3) ⑥, 제2. 3. 5) (3) ⑦, 제2. 3. 5) (6) ⑧, 제2. 3. 5) (8), 제2. 3. 5) (10), 제2. 3. 11), 제3, 제5. 10, 제5. 10. 10-4 1), 제5. 10. 10-4 3) (2), 제5. 10. 10-4 6) (2), 제5. 10. 10-5 4) (3) 및 (4), 제8. 6. 6.5 6.5.2]

1) 특수용도식품 이외에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 · 규격 마련 필요
2)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적용가능한 공통

소식

기준 및 규격 신설

3) 기타 영 · 유아식 유형은 이유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 · 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 명칭을 변경하고, 이유식 용도인 영 · 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영 · 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통합

4)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 · 규격 관리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다.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안 제1. 3. 65)]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의 개념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라.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안 제2. 3. 4) (2) 가 및 나]

1) 식중독균 규격 적용문구를 명확히하고, 표의 형태로 단순화

2) 식중독균 규격의 적용 문구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해석상의 혼란 방지

마.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④]

1) 크릴유의 중금속 구성 특성을 반영한 중금속 기준 개정 필요

2) 크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3)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크릴유의 수입 ·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위해도가 큰 무기비소 기준 관리로 식품 안전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

바. 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안 제2. 3. 17), 제5. 4. 4-7 5) (1), 제5. 4. 4-7 6) (1), 제5. 6. 5) (1), 제5. 6. 6) (1), 제5. 7. 7-3 5) (2), 제5. 7. 7-3 6) (8), 제5. 14. 14-12 5) (8), 제5. 14. 14-12 6) (6)]

1) 원료에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수준이 매우 낮아 기준 ·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총중금속 기준 개선 필요

2) 캡슐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주정의 중금속 기준 삭제

3) 관리 실효성이 적은 중금속 기준을 삭제함으로서 생산자의 관리부담 감소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사.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안 제2. 3. 10), 제8. 9.12, 제8. 9.13]

1) 새로이 구조가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목록에 추가 신설 필요

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펜트라민을 부정물질 목록과 시험법에 추가 신설

3)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아.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이명, 학명, 사용부위 및 사용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

소식

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품목명(4품목), 이명(5품목), 학명(9품목), 사용조건(1품목)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2품목)를 통합

3) 신청인에 한하여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한 산겨릅나무를 [별표3] "한시적 기준 ·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

4)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원료의 사용확대를 통해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1) 디클로르보스, (31) 마이클로뷰타닐, (55) 뷰프로페진,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42) 트리아디메폰, (162) 페니트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92) 프로피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24) 사이목사닐, (230) 크레속심메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73) 밀베멕틴, (286) 에트리디아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6) 아세퀴노실,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41) 피리벤카브, (450) 발리페날레이트]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4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3. 3.2 3.2.1 가. 3) 나) (1) 및 (2), 제8. 9. 9.1 9.1.5 마, 제8. 9. 9.1 9.1.9]

1) 기준 · 규격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및 개정 필요

2) 어유에 적용가능하도록 무기비소 시험법 개정

3) 식품 중 메틸수은 시험법을 추가 신설

4)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 삭제

5)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인 벤젠이 사용되는 시험법을 헥산으로 대체하여 개정

6)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식품첨가물의 기준 · 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안 제4. 3. 2), 제5. 9. 9–4 5) (7), 제5. 9. 9–7 5) (7), 제5. 10. 10–6 6) (2), 제5. 10. 10–8 6) (2), 제5. 14. 14–3 6) (2), 제8. 4. 4.11 가. 1), 제8. 4. 4.19 가. 1), 제8. 4. 4.19 나, 제8. 4. 4.24 다. 1), 제8. 6. 6.9 6.9.4 6.9.4.1 가. 3), 제8. 6. 6.11 6.11.1 6.11.1.1 가, 제8. 9. 9.3 9.3.2]

1)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의 규격 적용대상 명확화

소식

2) 음료류에 대한 소브산 등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 규격 개정사항 반영
3) 청주의 총산 시험법 중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호박산 산도계수 정정
4) 미생물 시험법 중 배지번호 정정
5) 휘발성 염기질소 시험법 중 미량확산법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추가
6) 한천의 수분시험법 중 건조감량법 추가
7) 다이옥신 시험법 중 독성등가계수 정정
8) 기준 · 규격의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시험법 오기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74호, 2018. 6. 27.(2018. 6. 27. ~ 2018. 8. 27.)
나) 공고 제2018-315호, 2018. 7. 25.(2018. 7. 25. ~ 2018. 9. 27.)
다) 공고 제2018-433호, 2018. 10. 12.(2018. 10. 12. ~ 2018. 11. 1.)
라) 공고 제2018-452호, 2018. 10. 19.(2018. 10. 19. ~ 2018. 11. 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1차) 2018. 9. 12, (2차) 2018. 11. 14.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오염물질분과 심의 : 2018. 10. 23.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18. 11. 1.
라)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 2018. 10. 5., (2차) 2018. 10. 17., (3차) 2018. 11. 20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제2018-1923호(2018. 6. 26.), 제2018-2281호(2018. 7. 23.), 제2018-3276호(2018. 10. 12.), 제2018-3413호(2018. 10. 23.)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 10. 24 ~ 2018. 10. 2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8. 11. 6.)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653회, 2018. 11. 12. ~ 2018. 11. 16.)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